

리스크관리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1. 10. 24. 세칙 제36호
 [시행 2012.8.31] [세칙 제44호, 2012.8.31, 타내규개정]
 [시행 2012.8.31] [규정 제137호, 2012.8.31., 타내규개정]
 [시행 2013.12.9.] [규정 제169호, 2013.12.9., 타내규개정]
 [시행 2015.1.1.] [규정 제202호, 2014.12.22., 타내규개정]
 [시행 2016.12.9.] [규정 제258호, 2016.11.8., 타내규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리스크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요인(risk factor)”이란 금리, 주가, 환율, 거래상대방 등 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2. “익스포저(exposure)”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으로 잔액, 시가평가액, 한도액 등을 말한다.
3. “목표기간(time horizon) 또는 보유기간(holding period)”이란 리스크가 발생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4. “예상손실(EL : expected loss)”이란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시장여건상 미래의 일정 기간 안에 손실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실을 말한다.
5. “비예상손실(UL : unexpected loss)”이란 신용거래 상대방의 부도확률이나 부도시 손실률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손실을 말한다.
6. “금리개정기일”이란 자금 운용액 및 조달액이 만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기일을 말한다.
7. “듀레이션”이란 자산·부채 및 부외거래 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시간에 대한 가중치로 사용한 가중평균만기로서, 금리변동에 따른 금리민감 자산·부채 및 부외거래의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 알려주는 지표를 말한다.
8. “금리민감자산·부채”란 금리변동에 따라 계약금리가 변하는 자산·부채로서 일정기간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금리가 재설정되는 자산·부채와 변동금리로 운용되는 자산·부채를 말한다.
9. “EaR : Earning at Risk”이란 일정한 신뢰수준 하에서 금리변동에 따른 최대 순이자

익 감소액을 말한다.

10.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이란 예외적인 상황 발생에 따른 리스크 변동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분석적 기법을 말한다.
11. “비상조달계획(contingency plan)”이란 유동성 위기상황 발생 및 확대에 대한 단계별 식별방법, 위기상황 발생 시 사용가능한 자금조달 수단 등을 명시한 비상대응계획을 말한다.
12. “VaR(Value at Risk)”란 일정한 신뢰수준 하에서 목표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가능액을 말한다.
13. “위험자본한도”란 VaR 산출 금액 또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산출된 위험량을 기준으로 설정·배분한 리스크 한도를 말한다.
14. “리스크관리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란 재단의 전사적 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는 부서를 말한다.
15. “리스크관리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란 리스크를 보유하거나 발생시키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제2장 리스크관리 소관부서 등

제3조(리스크관리 소관부서 업무) ① 규정 제5조제2항제1호의 소관부서 리스크관리 업무란 아래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8.31, 2013.12.9, 2014.12.22>

1. 기획조정실 : 재단 전체의 통합리스크 관리 및 자본적정성 평가
2. 대출지원부 : 여신 기획 및 운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
3. 상환관리부 : 여신 운용관련 리스크 관리(기한이익 상실이전 채권의 리스크관리)
4. 학자금운영부 : 적정 자본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원화 및 외화 금리·유동성리스크 관리, 단기금융상품 및 유가증권 시장·신용리스크 관리
5. 상환지원부 : 기한이익 상실 후 채권의 리스크 관리
6. 부서공통 : 운영리스크 관리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소관부서와 독립적으로 리스크 현황, 대책 및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4조(리스크관리담당자) ① 담당자는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위원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부서 자체적으로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재무관련 부서의 경우 운용 및 조달업무 담당자(Front office)가 리스크관리담당자(Middle office)를 겸직할 수 없다. 그러나 부서의 인원구성상 불가피한 경우 주관부서장

의 합의로 결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각 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주관부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소속 사업부문에 설정된 리스크한도 준수 여부 모니터링
2. 새로운 유형의 거래 또는 제도의 도입에 따른 리스크 평가
3. 리스크관리 정책의 이행 및 리스크 관련 정보 보고
4. 해당되는 리스크 축소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제3장 종합리스크 관리

제5조(종합리스크 관리원칙) ① 종합리스크관리의 목표와 기본원칙은 규정 제3조(리스크관리 목표) 및 제4조(리스크관리 기본원칙)에 따른다.

② 각종 리스크 한도 및 자본관리는 위험자본을 기준으로 배정·관리 하되, 재단의 회계특성을 감안한 자본금의 성격을 반영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 대상 리스크별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며, 허용한도 초과 시에는 소관부서는 초과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향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장의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한다.

제6조(위험자본의 산출) ① 리스크별 위험자본 사용액을 산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VaR(Value at Risk)방법론을 사용한다.

② 한도 관리를 위해서 주관부서는 VaR을 측정하고, 동 측정치를 이용하여 각 사업부문의 한도대비 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③ 리스크 유형별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 신용 위험자본은 내부모형에 의한 신용 VaR(Value at Risk)로 측정한다.
2. 시장 위험자본은 내부모형에 의한 최대 손실예상액 VaR(Value at Risk)로 측정한다
3. 금리 위험자본은 금리변동에 따른 최대순자산가치변동예상액 VaR(Value at Risk) 또는 최대손익변동예상액 EaR(Earning at Risk)으로 측정한다
4. 운영 위험자본은 총이익(gross income) 또는 총손실분포에 의한 최대손실예상액 운영 VaR (operational VaR)로 측정한다
5. 기타 「바젤Ⅱ의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금융감독원)에 제시된 표준방법으로 계산된 위험량을 사용하여 통합리스크량을 산출할 수 있다

제7조(리스크 점검 및 보고) ① 주관부서는 재단 전체의 리스크가 가용자본 대비 적정한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적정하지 않을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경영진 및 리스크관리위

원회에 보고한다.

② 주관부서에서 소관부서의 담당자에게 제4조제3항의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청할 경우 각 부서는 해당 자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각 사업 부문과 독립적으로 리스크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8조(리스크 관련 합의) ① 각 부서는 신규 제도의 신설, 신규 사업의 추진, 기존제도 또는 업무처리절차의 중요한 변경 등에 따라 재무적 리스크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주관부서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사전 합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상품 또는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대출 금리 체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단기매매증권(HFT:held for trading)의 매도가능증권(AFS:available for sale)계정 편입과 관련한 사항
4. 만기보유채권(HTM:held-to-maturity)의 중도매각과 관련한 사항
5. 채권발행 한도결정·변경,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6. 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각종 한도의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8. 사전에 승인 받은 한도가 없는 트레이딩 거래 시
9. 그 밖에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각 부서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 파생상품 거래목적 및 거래로 인한 재무적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 내용을 사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리스크유형별 한도관리방법) ① 각 부서의 담당자는 리스크 유형별로 설정된 각종 한도 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한도 초과 시 주관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각 부서와 별도로 한도 운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한도 초과 시 또는 한도 초과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사장에게 보고 후 적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부문별 리스크관리

제1절 신용리스크

제10조(리스크인식 및 관리목적)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

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재무적 손실 위험을 일정한 범위내로 유지하고, 리스크의 실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관리대상) 신용리스크 관리대상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 상품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
2. 만기보유 유가증권
3. 대출채권
4. 선물, 스왑 등 파생상품
5. 그 밖에 주관부서장이 지정하는 관리대상

제12조(관리부서) 신용리스크는 「직제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대상 상품 취급부서가 관리한다. <개정 2012.8.31>

제13조(한도설정)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 또는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1. 신용위험자본한도
2. 예상손실률
3. 연체율

제14조(측정방법) ① 신용리스크 측정 대상은 제11조에서 정한 관리대상으로 한다. 다만, 측정의 목적에 따라 그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측정지표는 기본적으로 VaR을 사용하고 부가적 관리지표로 예상손실률, 연체율 등을 산출하여 관리하며, 금융환경과 재단의 사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고 측정방법의 합리성, 일관성,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담당자는 제2항의 리스크 측정지표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의 리스크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재단의 신용 VaR을 매월 측정하며, 각 사업부문의 신용 VaR측정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제15조(보고) 주관부서장은 예상손실과 내부관리 목적의 비예상손실 측정치를 분기 1회 이상 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사항 중 주요 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시장리스크

제16조(리스크인식 및 관리목적) 금리, 주가, 환율, 상품가격 등 시장가격 변동에 의한 보유 자산의 손실위험을 일정 범위내로 유지하고, 리스크의 현실화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로 한다.

제17조(관리대상) 시장리스크 관리대상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
2.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도가능증권
3. 파생금융상품(헤지목적 제외)
4. 그 밖에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관리대상

제18조(관리부서) 시장리스크는 「직제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대상상품 취급부서가 관리한다. <개정 2012.8.31>

제19조(한도설정) 시장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VaR 한도
2. 포지션 한도
3. 손실 한도
4. 거래 한도
5. 손절매 한도

제20조(측정방법) ① 시장리스크 측정대상은 제17조에서 정한 관리대상자산으로 한다. 다만, 측정 목적에 따라 그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리스크 측정지표는 기본적으로 VaR를 사용하고, 상품의 종류에 따라 부가적 관리지표로 듀레이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담당자는 제2항의 리스크 측정지표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의 리스크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시장리스크를 매월 측정하며, 각 사업부문의 시장리스크 측정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제21조(보고) 주관부서장은 VaR 측정치와 기타 관리지표를 월1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사항 중 주요 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금리리스크

제22조(리스크인식 및 관리목적) 자산·부채의 금리개정기일 불일치로 인하여 금리가 재단의 재무상태에 불리하게 변동될 때 나타나는 손실가능성을 일정한 범위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관리대상) 금리리스크 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리민감자산·부채

2. 금리민감 파생금융상품
3.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관리대상

제24조(관리부서) 금리리스크는 「직제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대상 상품 취급부서가 관리한다. <개정 2012.8.31>

제25조(한도설정) 금리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EaR 한도
2. VaR 한도
3. 금리갭 한도

제26조(측정방법) ① 금리리스크 측정대상은 제23조에서 정한 관리대상으로 한다. 다만, 측정 목적에 따라 그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금리리스크의 측정지표는 금리갭, 듀레이션갭, VaR, EaR 등을 사용한다.

③ 주관부서는 금리리스크를 매월 측정하며, 재단의 리스크 측정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제27조(보고) 주관부서장은 금리리스크관리지표를 월1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유동성리스크

제28조(리스크인식 및 관리목적) 유동성 과부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자산처분이나 고비용의 자금차입에 따른 손실발생 및 유효한 투자기회를 상실하게 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관리대상) 유동성리스크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흐름을 수반하는 자산 및 부채의 모든 거래(파생상품 포함)
2.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관리대상

제30조(관리원칙) 유동성리스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한도(또는 비율) 및 조기경보지표의 관리를 통하여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2. 자금의 조달·운용은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되어야 한다.
3. 정기적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위기상황 발생이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31조(관리부서) 유동성리스크는 학자금운영부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4.12.22>

제32조(한도설정)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 및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1. 유동성비율

2. 유동성갭 한도 및 비율
3. 조기경보지표
4.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관리대상

제33조(측정방법) ① 유동성리스크 측정 대상은 제29조에서 정한 관리대상으로 한다. 다만, 측정 목적에 따라 그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유동성리스크 측정지표는 유동성비율, 유동성갭 및 기타 보조지표 등을 사용한다.
- ③ 담당자는 제2항의 리스크측정지표에 따라 해당사업부문이 관리하는 리스크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④ 주관 부서는 유동성리스크를 매월 측정하며, 각 사업부문의 리스크 측정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제34조(비상자금수급계획) ① 자금 조달·운용 부서장은 예기치 못한 유동성 부족상태에 대비하여 긴급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 비상자금수급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 주기적으로 유동성 수준을 평가한다.

- ② 자금 조달·운용 부서장은 동 계획 및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주관부서장은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35조(보고) 주관부서장은 유동성비율, 유동성갭 및 기타 관리지표를 월1회 이상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사항 중 주요 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운영리스크

제36조(리스크인식 및 관리목적)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관리대상) ① 관리대상 운영리스크는 규정 제2조제1호나목(운영리스크)을 기준으로 하되,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무적 손실 외에도 비재무적 영향을 초래하는 운영리스크를 포함한다.

- ② 운영리스크 측정은 재무적 손실을 초래하는 운영리스크만을 대상으로 하며, 동 재무적 손실이 신용리스크 등 타 부문별리스크에 반영되는 경우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8조(관리원칙) 운영리스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 한다.

1. 단위 부서 중심의 리스크 인식 및 통제 수행
2. 사전 예방 중심의 리스크 모니터링 기능 강화
3. 리스크관리활동과 통제개선의 선순환 구조 구축

제39조(관리부서) 각 부서장은 재단의 운영리스크 관리정책 및 관리체계에 따라 다음 각 호

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되, 부서 내 운영리스크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운영리스크관리(인식, 평가, 모니터링·보고) 수행
2. 내부통제 및 리스크경감 대책수립·시행
3. 운영리스크관리 관련 문서화

제40조(관리방법) ① 운영리스크는 인식 및 평가, 측정, 통제 및 경감, 모니터링, 보고 등의 관리활동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주관부서는 운영리스크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제반 실무절차 및 시스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41조(측정방법) ① 운영리스크 측정 대상은 제37조에서 정한 관리대상으로 한다. 다만, 목적에 따라 그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측정은 기초지표법(BIA ; Basic Indicator Approach), 표준방법(TSA ; The Standardized Approach), 고급측정법(AMA ; Advanced Measurement Approaches)을 통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운용리스크를 분기별로 측정하며, 각 사업부문의 리스크 측정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제42조(보고) 주관부서장은 운영리스크 측정 후 분기 1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사항 중 주요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제43조(관리목적) 위기상황 발생 시에 대비하여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함으로써 재단의 경영 및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44조(관리원칙) ① 주관부서는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재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잠재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실시한다.

② 위기상황분석은 사전에 수립된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④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는 재단 포트폴리오 특성과 거시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실시주기) 대상 포트폴리오 특성에 따라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연 1회 이상은 실시한다.

제46조(모니터링 및 보고) 주관부서장은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결과를 최소 연 1회 이상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사항 중 주요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유예) 이 세칙의 리스크측정은 관련 지표 산출 및 관리를 위한 IT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어 운영되는 시점까지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부칙 <세칙 제44호, 2012.8.31>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생략

② 리스크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8조, 제24조 중 “「업무분장규정」”을 “「직제규정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규정 제137호, 2012.8.31> (직제규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리스크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전략부(리스크관리팀)”을 “경영기획실(리스크관리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여신기획부”를 “여신관리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여신운영부”를 “상환운영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상환관리부”를 “신용지원부”로 한다.

④부터 ⑳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규정 제137호, 2012.8.31>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리스크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여신관리부”를 “대출지원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상환운영부”를 “대출상환부”로 한다.

㉓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규정 제202호, 2014.12.22>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정기인사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리스크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창조평가연구부(리스크관리팀)”을 “학자금금융연구소(금융리스크팀)”으로 하고, “대출지원부”를 “일반학자금대출부”로 하고, “대출상환부”를 “일반학자금대출부 및 든든학자금대출부”로 하고, “재무관리부”를 “학자금지원부”로 한다.

제31조 중 “재무관리부”를 “학자금지원부”로 한다.

⑥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규정 제258호, 2016.11.8.>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11.8. 개정된 본 규정의 직제에 따라 시행한 첫 인사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리스크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학자금금융연구소(금융리스크팀)”를 “기획조정실”로 하고, “일반학자금대출부”를 “대출지원부”로 하고, “일반학자금대출부 및 든든학자금대출부”를 “상환관리부”로 하고, “학자금지원부”를 “학자금운영부”로 하고, “신용지원부”를 “상환지원부”로 한다. 제31조 중 “학자금지원부”를 “학자금운영부”로 한다.

⑤부터 ㉓까지 생략